M - 107 - 2012

#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# ○ 제·개정경과

- 1996년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7월 기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8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### 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KS B 0817('06) : 금속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통칙

- KS B 0831('01) : 초음파 탐상시험용 표준 시험편

- KS B 0896('99) :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

- KS D 0233('05): 압력용기용 강판의 초음파 탐상 검사방법

- KS B 0534('00) : 초음파 탐상장치의 성능 측정방법

- KS B 0550('06) : 비파괴 시험 용어
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안전검사)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(안전검사) 및 36조의2(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)에 따라 사업장에서 압력용기 등의 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두께 6 mm이상의 페라이트계 강재로 제작한 압력용기, 보일러류, 저장조 등 용접구조물(이하 "설비"라 한다)의 완전용입 용접부를 대상으로 한 펄스반사법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A탐상(A-scan)" 이라 함은 펄스반사법에 의해 오실로스코프상에 나타 난 에코에 의해 휴을 검출하는 탐상방법이다.
- (나) "B탐상(B-scan)" 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흠을 수직 단 면형상으로 모니터에 나타내는 기법으로써, 흠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탐 상방법이다.
- (다) "C탐상(C-scan)" 이라 함은 수동 및 자동탐상에 의하여 흠을 평면형상으로 모니터에 나타내는 기법으로써, 흠의 위치를 판별하는 탐상방법이다.
- (라) ""D탐상(D-scan)" 이라 함은 탐상부의 평면과 단면 및 측면을 동시에 모니터에 나타내는 기법으로써, 임의의 미세 단면을 선택적으로 확인할

M - 107 - 2012

수 있는 탐상방법이다.

- (마) "탐상장치(Scanner)"라 함은 초음파의 주사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탐촉자를 고정시켜 탐상속도, 방향 등 조건을 균일하게 해 주는 장치로 써 자동탐상장치를 포함한다.
- (바) "접촉매질"이라 함은 시험체와 탐촉자 사이의 공기층을 없애주고 미끄 럼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 또는 점성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.
- (사) "대비시험편(RB: Reference block)" 이라 함은 특정한 시험체와 유사한 재질로 제작한 시험편으로써, 탐상기의 감도 조정에 사용된다.
- (아) "표준구멍"이라 함은 탐상기의 게인을 조정할 때 표준 반사원으로 사용되는 시험편 내에 만들어진 규정된 모양과 치수를 가진 구멍을 말한다.
  - (자) "빔 노정"이라 함은 초음파 빔이 시험체속을 통과한 편도거리를 말한다. 탠덤법 및 두 갈래 주사법의 경우에는 초음파 빔이 시험체속을 통과한 거리의 1/2을 말한다.
  - (차) "측정범위"라 함은 탐상기의 눈금판 횡축에 표시된 빔 노정의 최대거리를 말한다.
  - (카) "에코높이 구분선"이라 함은 흠의 에코높이를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위한 선으로써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진폭 특성 곡선으로 구성된다.
  - (타) "교정눈금판"이라 함은 에코높이 구분선을 기입한 눈금판 또는 보조 눈금판을 말한다.
  - (파) "영역"이라 함은 에코높이에 따라 흠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교정 눈금판위에 표시된 에코높이 구분선의 구간을 말한다.

#### M - 107 - 2012

- (하) "검출레벨"이라 함은 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정한 에코높이 의 최저 한계레벨을 말한다.
- (거) "흠의 지시길이"라 함은 탐촉자의 이동거리로 추정한 흠의 겉보기길이를 말하다.
- (너) "목회전주사"라 함은 경사각법에 있어서 탐촉자의 입사점을 중심으로 탐촉자를 회전시켜 초음파빔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주사방법을 말한다.
- (더) "음향이방성"이라 함은 시험체속에서 초음파의 음속 등과 같은 초음파 전파특성이 탐상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재료 특성을 말한다.
- (러) "표준시험편(STB : Standard block)"이라 함은 재질·모양·치수가 규정되어 초음파적으로 검정된 시험편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일반사항

(1) 표준시험편과 대비시험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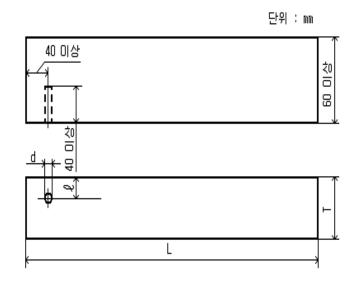
#### (가) 표준시험편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표준시험편(STB)은 KS B 0831에서 규정하는 A1형 및 A2형 또는 A3형 표준시험편으로 한다.

#### (나) 대비시험편

- ① 대비시헊편(RB)은 탐상기의 감도조정에 사용된다.
- ② 대비시험편은 <그림 1> 및 <표 1>과 같이 시험체 또는 시험체와 초음 파 특성이 비슷한 강재로 제작된다.

- ③ 대비시험편의 표면상태는 시험체의 표면상태와 동등해야 한다.
- ④ 표준구멍은 탐상면과 평행하게 가공되어야 하며, <그림 1>에서 규정하는 위치 이외에도 추가될 수 있다.



L: 대비시험편의 길이. 대비시험편의 길이는 사용하는 빔 노정에 따라 구한다.

<그림 1> 대비시험편의 규격

<표 1> 대비시험편의 치수

[단위 : mm]

시험편의	시험체의 두께	대비시험편의	표준구멍의	표준구멍의
명칭	(t)	두께 (T)	위치 (🖞)	지름 (d)
No.1	25 이하	19 또는 t(주 <sup>1</sup> )	T/2	2.4
No.2	25 초과 50 이하	38 또는 t	T/4	3.2
No.3	50 초과 100 이하	75 또는 t	T/4	4.8
No.4	100 초과 150 이하	125 또는 t	T/4	6.4
No.5	150 초과 200 이하	175 또는 t	T/4	7.9
No.6	200 초과 250 이하	225 또는 t	T/4	9.5
No.7	250 초과	t	T/4	(주²)

 $(주^1)$  시험체의 두께(t)와 대비시험편의 두께(T)가 같은 경우 대비시험편의 표면 거칠기는 시험체와 동등해야 한다.

M - 107 - 2012

(주<sup>2</sup>) 시험체의 두께가 250 mm를 초과하는 경우 대비시험편의 두께가 50 mm 증가할 때마다 표준구멍의 지름은 1.6 mm씩 증가된다.

#### (2) 접촉매질

접촉매질은 <표 2>에 따른다.

<표 2> 탐상면의 거칠기와 접촉매질

탐상면의 거칠기 (R <sub>max</sub> ) 공칭주파수 (MHz)	30 μm 이하	30 μm 초과 80 μm 미만	80 µm 이상 (주 <sup>3</sup> )
5	A	В	В
2	A	A	В

(주<sup>3</sup>) 탐상면을 80 m미만으로 다듬질하거나 감도를 보정한다.

#### [비고]

A : 임의로 접촉매질을 선정한다.

B: 농도 75 %이상의 글리세린 수용액, 글리세린 페이스트 또는 음향결합이 이와 동등 이상인 접촉매질을 선정한다.

#### (3) 탐상기

### (가) 탐상기에 필요한 기능

- ① 펄스반사식(A탐상)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B탐상, C탐상, D탐상 등이 가능한 탐상기도 사용할 수 있다.
- ② 1탐촉자법, 2탐촉자법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탐상 기능이 부가된 탐상기도 사용할 수 있다.
- ③ 2 MHz~10 MHz 범위의 탐촉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게인조정기는 1스텝이 2 dB이하이고 조정량의 합계는 50 dB이상이어야 한다.
- ⑤ 표시기는 옥외 탐상작업에도 판독에 지장이 없도록 에코모양이 선명하여 야 한다. 특히 에코의 정상부가 선명하고 보기 쉬워야 한다.

#### (나) 탐상기에 필요한 성능

M - 107 - 2012

- ① 증폭 직선성은 KS B 0534에 따라 측정하고 ±3 %의 범위내로 한다.
- ② 시간축의 직선성은 KS B 0534에 따라 측정하고 ±1 %의 범위내로 한다.
- ③ 탐촉자의 케이블 길이는 2 m이내로 한다.
- ④ 전원 전압의 변동에 대한 안정도는 사용전압 범위내에서 측정한다. 이때 감도변화는 ±1 dB의 범위내, 세로축 및 시간축의 이동량은 풀스케일의 ± 2%의 범위내로 한다.
- ⑤ 주위온도에 대한 안정도는 기준 주위온도(15 ℃~20 ℃)에서 20 ℃를 상승시킨 경우와 20 ℃를 하강시킨 경우의 에코모양 변화를 관측하여 에코높이의 변동 및 시간축의 이동량을 10 ℃ 당으로 평가하여 에코높이의 변동은 ±2 dB의 범위내, 시간축의 이동량은 풀스케일의 ±2 %의 범위내로한다.

#### (다) 탐상기 성능의 점검

탐상기는 KS B 0534에 따라 장비의 구입 시 및 구입 후 12개월 이내마다 점검하여 소정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
#### (4) 탐촉자

#### (가) 탐촉자에 필요한 기능

- ① 탐촉자는 사용하는 탐상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- ② 탐상주파수는 공칭주파수의 90~110 % 범위내로 한다.
- ③ 경사각 탐촉자의 양측에는 입사점 측정이 용이하도록 1 mm 간격의 안내 눈금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④ 경사각 탐촉자의 진동자 공칭치수는 원칙적으로 <표 3>에 따른다.

<표 3> 경사각 탐촉자의 공칭주파수와 진동자의 공칭치수

공칭 주파수(MHz)	진동자의 공칭치수(mm)		
2	10×10, 14×14, 20×20		
5	10×10, 14×14		

M - 107 - 2012

⑤ 수직 탐촉자의 진동자는 원형으로 하고, 그 공칭지름은 <표 4>로 한다.

<표 4> 수직 탐촉자의 공칭주파수와 진동자의 공칭지름

공칭주파수(MHz)	진동자의 공칭지름(mm)		
2	20, 28		
5, 10	6, 10, 20		

#### (나) 경사각 탐촉자에 필요한 성능

- ① 접근한계길이는 <표 5>에 표시된 값이내로 한다. 다만, 탠덤법에 사용되는 탐촉자의 최소 입사점간 거리는 공칭주파수 5 MHz, 공칭굴절각 45°의 탐촉자에서는 20 mm이하, 70°의 탐촉자에서는 27 mm이하, 2 MHz, 45°에서는 25 mm이하로 한다.
- ② 공칭굴절각은 35°, 45°, 60°, 65° 또는 70°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공칭굴절각과 표준시험편(STB)에서 측정한 굴절각의 차이는 상온(10 ℃~30 ℃)에서 ±2°이내이어야 한다. 다만, 공칭굴절각이 35°인 경우에는 0°~4°이내이어야 한다. 탠덤법에서 공칭굴절각은 판두께 20 ㎜이상 40 ㎜미만의 경우 70°, 판두께 40 ㎜이상 의 경우 45°로 하고, 표준시험편(STB)에서 측정한 송신 및 수신용 탐촉자의 굴절각 차이는 2°이하이어야 한다.

#### (다) 수직탐촉자에 필요한 성능

- ① 사용하는 탐상기와 조합하여 표준시험편(STB) V15-5.6의 에코높이를 눈금판의 50 %로 설정하고, 다시 감도를 30 dB 올렸을 때 노이즈 등의 에코높이는 눈금판의 10 %이하이어야 한다.
- ② 원거리 분해능은 사용하는 탐상기와 조합하였을 때 KS B 0534에 따라 측정하여 <표 6>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.
- ③ 불감대는 사용하는 탐상감도에서 송신펄스 또는 표면에코의 상승점에서부터 에코 높이가 20 %가 되는 점까지의 길이로 하고, 철강에서의 거리를 읽는다. 불감대의 값은 공칭주파수가 5 MHz에서 8 mm이하, 2 MHz에서

는 15 ㎜이하로 한다. 사용하는 빔 노정이 50 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.

< 표 5> 접근한계길이

진동자의 공칭치수(mm)	공칭 굴절각(°)	접근한계길이(mm)
	35	25
	45	25
20×20	60	30
	65	30
	70	30
	35	15
	45	15
$14 \times 14$	60	20
	65	20
	70	20
	35	15
	45	15
10×10	60	18
	65	18
	70	18

<표 6> 수직탐촉자의 원거리 분해능

공칭주파수(MHz)	원거리 분해능(mm)
2	9 이하
5	6 이하

# (라) 경사각 탐촉자의 성능점검

사용하는 탐촉자는 <표 7>에 규정한 시기에 점검하여 4항(4)호의(나)에서 정하는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.

<표 7> 경사각 탐촉자의 성능 점검 시기

점검 항목	점검 시기		
빔 중심축의 치우침	작업개시시 및 작업시간 8시간 이내마다		
A1감도			
A2감도			
원거리 분해능	구입시 및 보수 직후		
접근한계길이			
불감대			

### (마) 수직탐촉자의 성능점검

사용하는 수직탐촉자는 구입시 및 사용중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4항 (4)호의(다)에서 정하는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.

# 5. 탐상시험 준비

### (1) 탐상방법의 선정

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용접부는 1탐촉자 경사각법으로 탐상한다. 수직법, 탠덤법, 경사평행 주사법, 용접선 위 주사법 등은 1탐촉자 경사각법의 적용이 곤란한 곳이나 1탐촉자 경사각법으로 탐상하는 것보다 흠의 검출이 적합한 곳에 적용한다. 탐상면에 수직인 그루브면 또는 루트면을 가진 판두께 20 mm 이상의 완전용입부 융합불량 및 용입불량은 탠덤법으로 탐상한다.

#### (2)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의 선정

탐상목적에 따라 A2형 표준시험편이나 RB-4 시험편을 사용하여 탐상감도를 조정한다. 다만 시험체의 두께가 75 mm 이상이거나 음향이방성이 있는 경우에는 RB-4 시험편을 사용한다.

#### (3) 수직탐상 시험편의 선정

사용하는 최대 빔 노정에 따라 <표 8>과 같이 RB-4 시험편을 선정하여 탐 상감도를 조정하고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한다. <표 8> 탐상감도 조정 및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용 시험편의 선정기준

사용하는 최대 빔 노정(mm)	적용하는 시험편
50 이하	RB-4 No. 3(주 <sup>4</sup> )
50 초과 100 이하	RB-4 No. 3(주 <sup>4</sup> ) 또는 4
100 초과 150 이하	RB-4 No. 4 또는 5
150 초과 200 이하	RB-4 No. 5 또는 6
200 초과 250 이하	RB-4 No. 6 또는 7
250 초과	RB-4 No. 7

(주⁴) RB-4의 No. 3은 시험체 두께 75 ㎜인 것을 사용한다.

# (4) 주파수의 선정

경사각법의 주파수는 <표 9>에 따르며, 수직법의 주파수는 <표 10>에 따른다. 다만, 초음파의 감쇠가 현저한 시험체의 탐상에는 표에서 규정된 것보다 낮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. 음향이방성이 있고 모재두께가 75 mm 이하인 시험체의 탐상에는 2 MHz는 사용하지 않는다.

<표 9> 경사각법에 적용되는 공칭주파수

모재의 판두께 t(mm)	공칭주파수(MHz)
75 이하	5 또는 2
75 초과	2

<표 10> 수직법에 적용되는 공칭주파수

사용하는 빔 노정(mm)	공칭주파수(MHz)
40 이하	2
40 초과	5 또는 2

#### (5) 검출레벨 선정

M - 107 - 2012

탐상목적에 따라 M 또는 L검출레벨을 선정한다.

# (6) 탐상 시기

용접후 열처리 등의 지정이 있는 부위는 최종 열처리 후에 탐상한다.

#### (7) 용접부 표면의 손질

덧살모양이 탐상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위는 적절하게 다듬질한 후 탐상한다.

# (8) 탐상면의 손질

탐상면의 스패터(Spatter), 스케일 녹, 도료 등을 제거한다.

#### (9) 모재의 탐상

경사각법으로 탐상시 초음파가 통과하는 모재부는 사전에 수직법으로 탐상하여 경사각법에 방해가 되는 흠을 미리 검출하여 기록한다. 이 경우 탐상감도는 건전부의 제2회 저면 에코높이가 80 %가 되도록 조정한다. 탐촉자는 판두께가 60 mm이하의 경우에는 공칭주파수 5 MHz, ø20 mm로 하고 판두께가 60 mm를 넘는 경우에는 2 MHz, ø28 mm로 한다.

#### 6. 탐상 장치의 조정 및 점검

#### (1) 경사각법

#### (가) 입사점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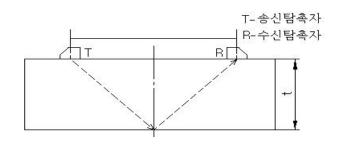
입사점은 A1형 또는 A3형 표준시험편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1 ㎜ 단위로 읽는다.

#### (나) 측정범위 조정

측정범위는 사용하는 빔 노정이상으로 하며, A1형 또는 A3형 표준시험 편을 사용하여 ±1 %의 정밀도로 조정한다. 다만, 시험체가 음향이방성이 있는 경우에는 빔 노정에 0.5스킵 거리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.

#### (다) 굴절각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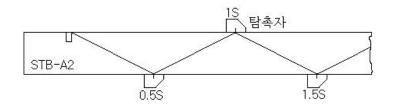
- ① 굴절각은 STB-A1 또는 STB-A3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0.5° 단위로 읽는다.
- ② 시험체가 음향이방성이 있고 공칭굴절각이 65° 또는 60°인 탐촉자로 탐 상하는 경우 <그림 2>와 같이 V 투과법에 의해 굴절각을 측정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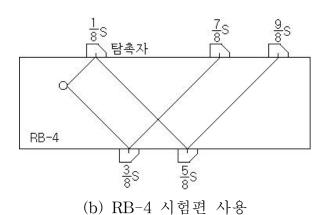
<그림 2> V 투과법

#### (라)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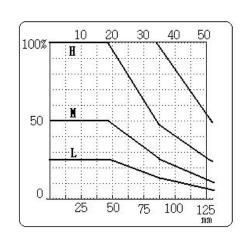
- ① 사용할 탐촉자를 이용하여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하며, 이를 보조눈금 판에 기입한다.
- ② A2형 표준시험편을 사용하여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 $\phi 4 \times 4$  mm의 표준구멍을 사용한다. RB-4를 사용하여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하는 경우에늦 RB-4의 Y표준구멍을 사용한다.
- ③ 에코높이 구분선은 <그림 3> (a), (b)와 같은 위치에 탐촉자를 놓고, 각각의 가장 높은 에코(이하, 최대에코라 한다)의 피크 위치를 보조눈금판에 기록한 후, 이들의 각 점을 이어서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한다.(<그림 4>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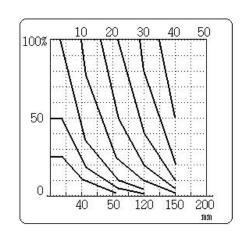


(a) A2형 표준시험편 사용



<그림 3>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을 위한 탐촉자 위치





[a] 5Z10×10A70, 측정범위 12 5 mm, STB-A2에 따른다.

[b] 5Z10×10A45, 측정범위 200 mm, RB-4(T=50 mm)에 따른다.

<그림 4> 에코높이 구분선의 작성 보기

④ A2형 표준시험편을 사용하는 경우, 0.5스킵거리 이내의 구분선은 0.5스킵

지점에서의 에코높이로 작성하고 진동자 치수가 20 mm × 20 mm이고 탐촉자의 굴절각이 45°인 경우 1스킵거리 이내는 1스킵지점에서의 에코높이로 하다.

또한, RB-4를 사용하는 경우, 1/8스킵거리 이내의 범위는 1/8스킵지점에서의 에코높이로 작성하고 RB-4의 No.1을 사용하는 경우 1/4스킵거리이내는 1/4스킵지점에서의 에코높이로 작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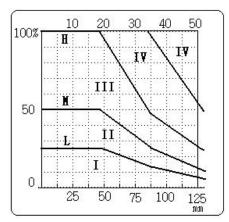
⑤ 에코 높이 구분선에서 음압이 6 dB씩 낮은 에코높이 구분선을 3개 이상 작성한다.

#### (마) 영역구분의 결정

① H선, M선, L선의 결정은 6항(1)호의(라)에서 작성한 에코높이 구분선 중, 하위에서 3번째 이상의 선을 골라서 H선으로 하고 이것을 탐상감도 조정을 위한 기준선으로 사용한다. H선은 원칙적으로 흠에코의 평가에 사용되는 빔 노정의 범위에서 그 높이가 전체 눈금판 높이의 40 % 이상인 선으로 한다.

H선보다 6 dB 낮은 에코높이 구분선을 M선으로 하고, 12 dB 낮은 에 코높이 구분선을 L선으로 한다.(<그림 5> 참조)

② H선, M선 및 L선으로 나뉜 각각의 영역은 <표 11>과 같이 구분한다.



<그림 5> H선의 선택과 영역 구분의 보기

<표 11> 에코높이의 영역구분

M - 107 - 2012

에코높이의 범위	에코높이의 영역
L선 이하	I
L선 초과 M선 이하	II
M선 초과 H선 이하	III
H선 초과	IV

#### (바) 탐상감도 조정

- ① A2형 표준시험편과 공칭굴절각 60° 또는 70°인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구멍(ø4×4 mm)의 에코높이가 H선에 일치하도록 게인을 조정하여 탐상감도로 사용한다. 공칭굴절각 45°인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구멍의 에코높이가 H선에 일치하도록 게인을 조정한 후, 감도를 6 dB 높이고 이때의 감도를 탐상감도로 사용한다.
- ② RB-4를 사용할 경우 표준구멍의 에코높이가 H선에 일치하도록 게인을 조정하고 이때의 감도를 탐상감도로 한다.
- ③ 경사평행주사법 및 용접선 위 주사법의 탐상감도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.

#### (사) 탐상장치의 조정 및 점검시기

입사점, 굴절각, 측정범위 및 탐상감도는 작업개시 시에 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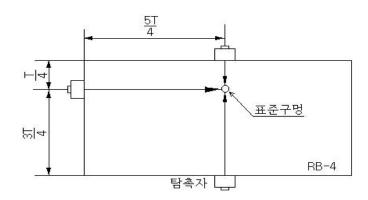
#### (2) 수직법

#### (가) 측정범위 조정

측정범위는 사용하는 빔 노정이상으로 하며 A1형 표준시험편 등을 사용하여 ±1 %의 정밀도로 조정한다.

#### (나)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

- ① 사용할 탐촉자를 이용하여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하며, 이를 보조눈금 판에 기입한다. 사용하는 빔 노정이 50 mm이하이거나 진동자의 공칭지름이 10 mm이고 사용하는 빔 노정이 20 mm이하인 경우에는 에코높이 구분선은 작성하지 않는다.
- ② 에코높이 구분선의 작성은 <그림 6>과 같이 T/4, 3T/4, 5T/4 등의 위치에 탐촉자를 놓고, 각각의 최대에코의 피크위치를 보조눈금판에 기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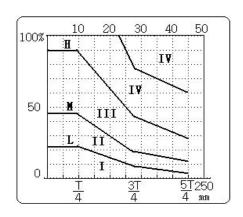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6> 에코높이 구분선 작성을 위한 탐촉자 위치

- ③ 이 에코높이 구분선에서 음압이 6 dB씩 낮은 에코높이 구분선을 3개 이 상 작성한다.
- ④ 보조눈금판에 기록된 3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에코높이 구분선을 작성한다.

# (다) 영역구분의 결정

영역구분은 6항(1)호의(마)에 따라 <그림 7>과 같이 결정한다.



[그림 7] 영역구분의 보기

#### (라) 탐상감도 조정

RB-4 표준구멍의 에코높이가 H선에 일치하도록 게인을 조정하고 이때의 감도를 탐상감도로 한다.

# (마) 탐상장치의 조정 및 점검시기

측정범위 및 탐상감도는 작업개시 시에 조정하며 작업시간 4시간 마다 점검하고, 조정 시 조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다.

# 7. 탐상시험

### (1) 경사각법

# (가) 평가대상 흠

평가대상 흠은 탐상감도를 규정대로 조정하고 M검출레벨의 경우에는 최대 에코높이가 M선을 넘는 것으로 하고, L검출레벨의 경우에는 최대 에코높이가 L선을 넘는 것으로 한다.

#### (나) 탐상감도

흠 검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항(1)호의(바)에서 정한 탐상감도보다

높은 감도로 게인을 조정하여도 좋다. 그러나 에코높이나 흠의 지시길 이를 측정을 할 때에는 규정된 탐상감도로 환원하여 측정한다.

#### (다) 에코높이의 영역

최대 에코높이를 나타내는 위치와 방향에 탐촉자를 위치시키고 그 최대 에코높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읽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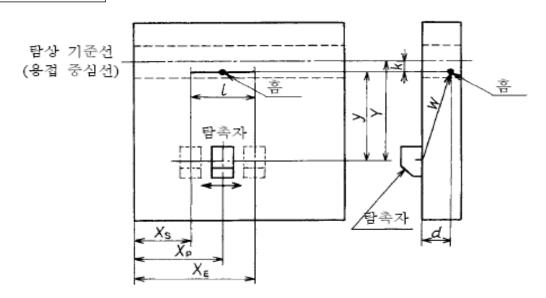
#### (라) 흠의 지시길이

흠의 지시길이는 최대 에코높이를 나타내는 탐촉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탐촉자를 좌우 주사하여 에코높이가 L선을 넘는 탐촉자의 이동거리로 한다. 이 경우 약간의 전후주사는 가능하나 목회전주사는 하지 않는다.

다만, 시험체 두께가 75 ㎜이상이고 주파수 2 MHz, 진동자 치수 20×20 ㎜인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 흠의 지시길이는 최대 에코높이의 1/2인 -6 dB를 넘는 탐촉자의 이동거리로 하며 1 ㎜의 단위로 측정한다.

#### (마) 흠 위치의 표시

<그림 8>과 같이 흠의 횡단면위치[깊이(d), 용접선에 직각방향의 위치(k)]는 최대 에코높이가 얻어지는 탐촉자의 위치(Xp)에, 평면위치는 흠의 지시길이( $\ell$ )의 시작점(Xs) 및 끝점( $X_E$ )에 각각 표시한다.



여기에서, y: 탐촉자 입사점에서 흠위치의 탐상면까지의 거리

Y: 탐촉자 입사점에서 탐상 기준선까지의 탐상면 거리

W : 탐촉자 입사점에서 흠까지 초음파가 진행한 거리

<그림 8> 흠 위치의 표시

#### (2) 수직탐상

#### (가) 평가대상 흠

평가대상 흠은 탐상감도를 규정대로 조정하고 M검출레벨의 경우에는 최대 에코높이가 M선을 넘는 것으로 하고, L검출레벨의 경우에는 최대 에코높이가 L선을 넘는 것으로 한다.

#### (나) 탐상감도

흠 검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항(1)호의(바)에서 정한 탐상감도 보다 높은 감도로 게인을 조정하여도 좋다. 그러나 에코높이의 측정이나흠의 지시길이를 측정할 때는 규정된 탐상감도로 환원하여 측정한다.

#### (다) 에코높이의 영역

최대 에코높이를 나타내는 위치와 방향에 탐촉자를 위치시키고 그 최대 에코높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읽는다.

# (라) 흠의 지시길이

흠의 지시길이는 최대 에코높이를 나타내는 위치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주사하여 에코높이가 L선을 넘는 탐촉자의 이동거리로 한다. 다만, 시험체의 두께가 75 ㎜이상이고 주파수 2 MHz인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 흠의 지시길이는 최대 에코높이의 1/2인 -6 dB를 넘는 탐촉자의 이동거리로 하며 1 ㎜의 단위로 측정한다.

#### (마) 흠 위치의 표시

흠의 횡단면 위치(깊이)는 최대 에코높이가 얻어지는 탐촉자의 위치에, 평면 위치는 흠 지시길이의 시작점 및 끝점에 각각 표시한다.

# 8. 시험결과의 분류방법

시험결과는 흠 에코높이의 영역과 흠의 지시길이에 의해 분류되며 <표 12>에 따른다. 양방향에서 탐상한 경우 동일한 흠의 분류가 다르게 나타날 때는 하위분류로 결정한다.

<표 12> 흠 에코높이 영역과 흠의 지시길이에 따른 흠의 분류

영역	M검출 L검출레변	레벨의 경우 벨의 경우는	우는 Ⅲ · Ⅱ와 Ⅲ		IV	
판두께 (mm) 분류	18 이하	18 초과 60 이하	60 초과	18 이하	18 초과 60 이하	60 초과
1류	6 이하	t/3 이하	20 이하	4 이하	t/4 이하	15 이하
2류	9 이하	t/2 이하	30 이하	6 이하	t/3 이하	20 이하
3류	18 이하	t 이하	60 이하	9 이하	t/2 이하	30 이하
4류	3류를 초과하는 것					

[비고]

M - 107 - 2012

"t"는 그루브가 있는 쪽의 모재두께(mm). 다만, 맞대기 용접에서 맞대는 모 재의 판 두께가 다른 경우는 얇은 쪽의 판 두께로 한다.

# 9. 기록

초음파탐상을 실시한 후 다음에 따라 기록한다.

- (1) 시공(제조)사업자명
- (2) 공사(제품)명
- (3) 시험번호 또는 기호
- (4) 시험년월일
- (5) 시험기술자의 서명과 자격
- (6) 재질과 치수
- (7) 용접방법과 그루브 모양
- (8) 사용한 탐상기명, 성능 및 점검일시
- (9) 사용한 탐촉자, 성능 및 점검일시
- (10) 사용한 표준 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
- (11) 탐상부분의 상태와 손질방법
- (12) 탐상범위
- (13) 접촉매질
- (14) 감도보정량
- (15) 검출레벨
- (16) 탐상데이터(용접선에 직각 방향의 탐촉자 위치, 빔 노정, 최대 에코높이, 흠의 지시길이)
- (17) 흠의 횡단면 위치(깊이, 용접선에 직각 방향의 위치) 및 평면위치(흠의 지시길이의 시작점 또는 끝점)
- (18) 합격여부와 그 기준
- (19) 기타사항